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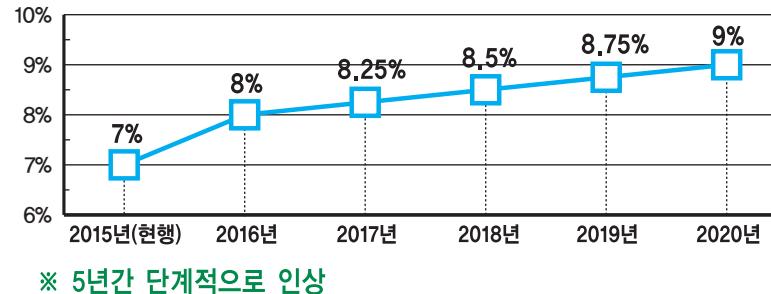
국민대타협『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및 『공적연금강화 합의』 등 바로알기

국민대타협『공무원연금법 개정안』 [2015년 5월 2일]

1. 공무원기여율 및 정부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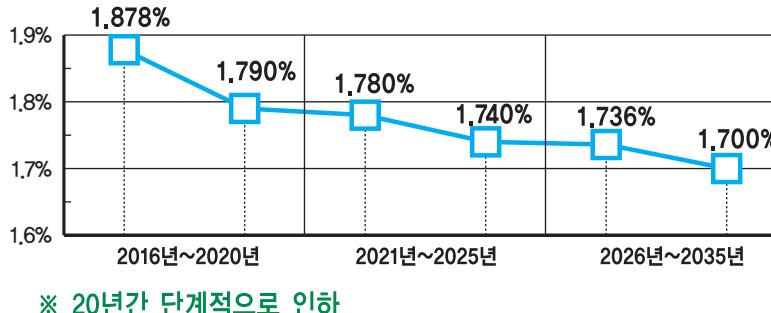
[공무원 기여금]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금부담금] 현행 보수예산의 7% → 9%



2. 공무원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 1.7%



3.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현행 33년 → 36년(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재 급여 수준 넘지 않음)

개정법 시행 전 재직기간	납부기간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명목소득대체율

현행 62.7%
(지급률 1.9% × 33년)



개정 61.2%
(지급률 1.7% × 36년)

4. 소득재분배(공직내 연금격차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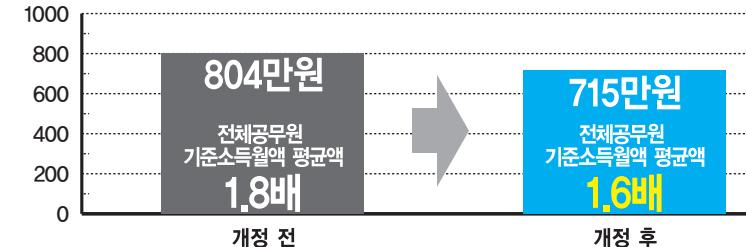
지급률 1% 해당 부분에 대해 재직기간 30년까지 15개 소득구간별 차등비율 적용

※ 〈비율구간〉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

비율 구간	적용 비율(%)	비율 구간	적용 비율(%)
0.3	300	1.0이상 1.1미만	100
0.3이상 0.4미만	216.67	1.1이상 1.2미만	95.45
0.4이상 0.5미만	175	1.2이상 1.3미만	91.67
0.5이상 0.6미만	150	1.3이상 1.4미만	88.46
0.6이상 0.7미만	133.33	1.4이상 1.5미만	85.71
0.7이상 0.8미만	121.43	1.5이상 1.6미만	83.33
0.8이상 0.9미만	112.5	1.6이상	81.25
0.9이상 1.0미만	10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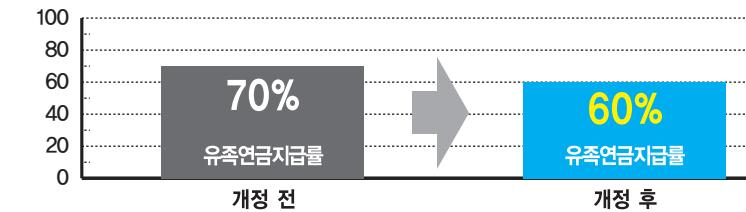
6.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고액연금자 방지)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804만원) → 1.6배(715만원)



7.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수급자에게도 유족연금지급률 70% → 60%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수급자는 제외

8. 연금액 한시 동결(수급자 고통분담)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CPI) 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 연금액을 5년간(2016년~2020년) 동결

9. 연금지급정지 강화

[전액정지 대상 확대]

현행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 선거직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추가

[일부 정지 강화]

근로·사업소득 있는 경우 최대 1/2 삽감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정지대상 기준소득에 추가

10. 연금수급요건 조정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 → 10년 이상으로 완화

11. 분할연금제도 도입

공무원과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균등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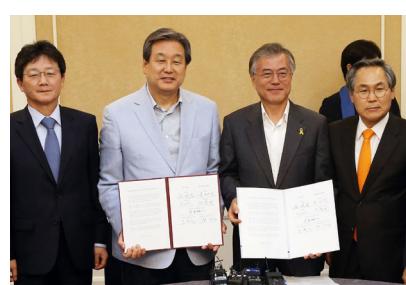
12. 비공무상 장해연금 도입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장해시에도 지급(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 여야 대표 합의문

[2015년 5월 2일]

-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 이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 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새누리당
당 대표
김무현
임대표
유한우
원내대표
우윤근
국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호연
국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조원진
국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강기철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현명
인사혁신처 차관 홍성호
2015. 5. 6.
대전한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허경복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광
한양숙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원종현
김성광
원종현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 최종 합의문

[2015년 5월 2일]

국민대타협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 설치 합의문」

1. 목 적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2. 논의 기구 설치

- 명칭 :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
- 설치 시기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1개월 이내
- 운영 기간 : 6개월 이내
- 구성 : 정부 대표, 공무원 · 교원 대표, 전문가 등

3. 논의 과제

논의 과제는 협의기구 가동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공무원 · 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 공무원 · 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4. 운영 방법

- 회의일정과 운영방법은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안전행정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과정을 거친다

국민대타협 「공적연금강화 합의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 사회적 기구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를 수 있도록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추천 단체 및 구성 인원은 각계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기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회적 기구는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관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사회적 기구는 2015년 5월 6일 설치하여, 9월 국회까지 운영한다.
-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률을 2015년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정부는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내한 고통 분담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고를 시행한다**.